미국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방향

Kate Cooney (미국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 도 입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의 벤처사업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 비영리 및 영리 부문 전반에서 사회적 목표를 사업에 활용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법적 형태를 갖추고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J. Gregory Dees는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혁신적 비영리 벤처, (그리고)… 비영리 커뮤니티 은행과 같은 사회적 목적의 벤처사업, 노숙자 재활훈련과 일자리 제공 사업을 실시하는 노숙자 쉼터와 같이 비영리 및 영리적 요소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조직 등"으로 설명한다(Dees, 1998). 1990년대에 두각을 나타낸 "보스턴 커뮤니티 캐피탈(Boston Community Capital)", "캘버트 소셜 벤처 캐피탈(Calvert Social Venture Capital)", "인베스터스 서클(Investors Circle)", 뉴 프로피트(New Profit, Inc.)", "로버츠 기업개발펀드(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 "소셜 벤처 파트너스(Social Venture Partners)" 등의 벤처자선그룹들과 2000년대 초반 예일 경영대학 골드만 삭스 비영리 사업계획 콘테스트와 같은 이니셔티브들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규모가 늘어나고 여러 수단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사회적 기업 개념의 정당성이 확산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신세대가 출현하면서 이제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일종의 티핑포인트에 이르렀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태어나 현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이거나 이제 막 직업 세계로 뛰어든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미사여구를 보고 들으며 성장하였다. 사회적 기업이 약속

하는 혁신과 커다란 변화의 잠재력에 매력을 느낀 밀레니엄 세대는 현재 티핑포인트에 이른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정점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의 선봉에 서 있다.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과 같은 유수의 대학들 모두 사회적 기업 설립, 소셜 임팩트 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 사회적 기업 경영, 사회적 혁신 등에 관한 강좌 수를 점차 늘리고 있다. MBA 과정, 비영리 경영 과정, 그리고 심지어 사회사업 훈련에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차원의 접근법을 가르치는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조직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비영리 사회적 기업 조직들은 강력한 네트워크 및 정책입안자들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더욱 정교한 접근 방식을 갖추고 있다. 비영리 부문의 자본투자 제약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환경운동 및 사회운동의 부산물로 생겨난 새로운 지속가능한 상품 시장의 잠재적 기회에 고무되어, 영리추구 사회적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영리추구 사회적 기업의 증가는 주 차원에서 새로운 유형의 회사법이 제정되면서, 투자 측면에서 사명과 금전적 목적을 혼합한 새로운 독창적인 금융 매체와 임팩트 투자회사(impact investing firms)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기업은 미국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며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유럽에도 등장하여(Nyssens, 2006) 세계 다른 지역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는데,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미국의 시장환경, 신자유주의 사회복지제도 및 문화적 규범 속에서 다른 국가의 사회적 기업과 다른 특징을 갖게 되었다(Kerlin, 2006). 미국과 유럽의 초기 사회적 기업 변화를 비교한 Kerlin의 연구(2006)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수익 배분에 법적 제한이 있어 비영리 사회적 기업 활동의 비중이 큰 반면에, EU는 통합된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협동조합, 상호기금, 협회 등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기업 모형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수익 분배를 허용한다. 또한 Kerlin은 미국이 사회적 기업을 정의함에 있어 사회적 부문 조직들의 사업 계획을 통한 수익 창출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혼합한 사업 계획에서 사회적 이익은 배제하고 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설계된 사업 계획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직들이 광범위한 계획을 통해 고용 창출 또는 수익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EU 전역의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는 EMES 그룹의 유럽 연구진에 의하면, EU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고 정의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거버넌스 구조 내 참여민주주의

와 사회적 이익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복지제도와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출현한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문제를 사적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을 옹호하며, 시장이 자본을 (심지어 자선 관련 자본(philanthropic capital)도) 가장 유망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고성과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사회적 부문의 비영리 단체들이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통해 자선 활동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모형을 통해, 신자유주의 복제제도의 기저를 이루는 두 가지 주요 신조인 공공부문에서 민간시장으로의 자선자금 기반의 이동과 고용을 통한 개인의 자기계발의 중요성이 구체화되었다(Dart, 2004; Garrow and Hasenfeld, 2014).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빈곤, 환경문제, 노동착취 등 큰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영리적 접근이 가속화되었는데, 이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서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시장기반 접근방식의 혁신과 아주 유사하기는 하지만 크게 중복되지 않는다. 영리 기업들은 임팩트 투자를 추구하는 반면에 비영리 기업들은 정부와 재단의 자선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장의 네트워킹 구조뿐 아니라 재정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Kerlin이 조직 모형은 이질적이지만 사회적 이익을 중시하고 순수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묘사한 유럽식 사회적 경제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영리추구적 사회적 기업 모형이 급증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대안적인 사회적 경제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시장경제와 인센티브를 사회적 목적과 결합하는 "윈윈" 전략으로 발달되었다. 다음에서 설명할 미국의 사회적 기업 판도 변화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담론은 현재의 자본주의 관행에 대한 더욱 거친 비판을 일부 측면에서 수용하고 있다.

■ 미국의 사회적 기업 판도 변화

근로통합 사회적 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WISEs)

미국의 경우, 초기에 사회적 기업은 영업이익을 통해 무제한 사용가능 순자산(unrestricted revenues)을 높이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들이 채택하는 대중적인 전략이었다(Adams and Perlmutter, 1991; Young, 1998; Cooney, 2007). 사회적 기업을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국의 정치·경제를 혁신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인식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 비영리 부문의 사회적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통적 복지국가 메커니즘 축소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Catford, 1998; Johnson, 2000). 복지국가 메커니즘의 축소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 급여를 한시적 근로연계형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Reconciliation Act)"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소매 체인점, 음식점, 보호감호 또는 조경사업 분야에서 비영리 벤처사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WISE)이 이 시기에 크게 성장하였고, 이는 복지 급여가 소진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새로운 고객집단에게 현장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이었다. 대부분의 WISE 조직은 취약계층을 위한 자체 직업재활제도에 대해 정부(또는 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는 동시에 재화 및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사회복지사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 19세기 이후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형태의 WISE가 미국 비영리 부문의 중요한 형태였지만, 지난 30년 동안에는 약물남용, 주거 불안정, 범죄 전과가 있는 개인들의 재활과 취약 청소년층의 전반적 발달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더욱 폭넓은 불완전 취업자 및 실업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WISE가 크게 성장하였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WISE의 시장지향성은 더 강해졌고, 이제 WISE는 보호사업장이 아니며 재화 및 서비스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한다.

전형적인 WISE 모형의 경우, 노동행렬의 끝부분에 위치한 이들에게 소프트 기술형성, 하드 기

술훈련, 근로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Galera, 2010), 이는 복지 개혁 및 관련 인력개발 정책의 목표에도 부합한다(Altstadt, 2007). 그러나 WISE는 저임금 노동시장 부문에 가장 착수가 용이하며, 많은 비숙련 근로자 흡수에 최적인 사업으로 이 근로자들을 해당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WISE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력(고용장벽이 있는 고객)을 고용한 상태에서 성공을 위해 다른 업체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여야 한다. 끝으로, 진입단계 사업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WISE는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채용해서 경쟁하면서 경쟁업체들보다 더 나은 고용조건을 부여하려고 노력한다. 미국의 WISE 모형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취한다. 즉 사회적 기업 활동은 여러 프로그램 중 단 하나로 제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공공기금 및 자선지금 지원 또는 멀티플 벤처링(multiple venturing)과 같은 더 나은 사업수단을 통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는 WISE가 사업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자원을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추가 기술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Haas 연구는 WISE 사업의 다양한 조직적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Haas 연구에서는 '어빌러티 원(Ability One)', '사회적 기업 동맹(Social Enterprise Alliance)', '경과적 일자리 네트워크(Transitional Jobs Network)', '사회적 기업 센서스(Social Enterprise Census)'를 포함한 주요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비영리 사업의 일환 또는 독립적 사업으로서 WISE를 운영하는 약 300개의 단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집계하였다. Haas 연구의 저자들은 WISE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2개 유형은 상대적으로 상업지향성이 더 크며 벤처사업에 크게 중점을 두는 유형으로, 사회적 채용 관행을 갖추어 사업을 설립·운영하는 1인 기업가 형태인 "브레이브 소울(Brave Soul)"과, 여러 상품 라인과 지역에 걸쳐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전형적인 상급 조직에 해당하는 "SE 엔진(SE Engine)"이 있다. 나머지 2개 유형은 벤처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인턴십이나 수습제를 통한 고용은 전체 자활 또는 개혁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인 "랩어라운드 프로바이더(Wrap-Around Provider)"와 멀티서비스 조직 내 대상 집단을 위한 여러 다양한 옵션들 중 하나로

WISE를 운영하는 비영리 조직인 "서비스 뷔페(Service Buffet)"가 이에 포함된다. 브레이브 소울 유형 조직들의 46%, 랩어라운드 프로바이더 유형의 56%가 2000년 이후에 설립된 반면, 서비스 뷔페 유형의 47%와 SE 엔진 유형의 43%가 1980년 이전에 설립되었다. 4개 유형은 예산 규모나 고용된 대상 고객 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종사상 지위(상용직 또는 임시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SE 엔진은 랩어라운드 프로바이더와 비교할 때, 총예산 대비 근로소득 비중이 29% 더 높아 훨씬 더 상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이브 소울 유형은 근로소득의 약 80%가 소비자와 상업 고객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장 소비자 대면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랩어라운드 프로바이더는 고객다변화가 가장 우수하며(공공부문, 개인 소비자, 상업 기업), 서비스 뷔페 유형은 자사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정부 구매자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 자료들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에 설립된 WISE는 사업 중심의 신설 기업이거나 실제 기업에서의 근무경험을 일련의 보완적 직업훈련 서비스의 핵심으로 삼는 전체론적 자활 및 고용 전환 기업(holistic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transition firm)인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에 이전의 조직들은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이거나 SE 엔진으로, 활발한 사회적 기업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10~20년 동안, WISE가 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정책 의제를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기회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취하도록 독려하며, 모범 사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새로운 네트워크가 등장하였다. WISE의 주요 현안은 여전히 사업 기회와 고객층의 기술 기반 훈련 수요를 매칭하고, WISE의 흑자 경영 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확보하며, 이러한 사업체들의 당초 설립 목적과 사명을 심화할 수 있도록 사업 활동을 단계적으로 수익성 있게 강화하는 데에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비영리 부문에서 WISE의 네트워크 및 사업 모형 개발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새로운 유형의 영리 사회적 기업도 확산되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운동과 유기농 식품 및 공정무역을 둘러싼 사회적 운동은 영리 사회적 기업들이 자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 상품 시장을 열어 주었다. 이는 WISE에 큰 의미가 있는데, WISE가 사

회적 채용과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두기는 하지만 경쟁시장에서 운영되며 친환경적이고 사회 지향적인 재화와 용역은 이러한 기업들에 잘 맞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을 확보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영리 조직이 지니는 자본 및 인력 확보의 제약을 감안하면 영리추구 법적 구조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주주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최고 운영 목표인 현시대의 규범하에서는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사업 조직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합법적인 대체 영리 조직의 등장은 도발적인 전개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 보겠지만, 최근 미국에 출현한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동기를 지닌 사업체(socially motivated business enterprise)는 사업과 사회적 목표들의 절충에 대한 지원이 더욱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WISE에 관한 Haas 전국 조사에 의하면, 표본에 포함된 WISE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비영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 중 소수는 새로운 법적 유형을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다른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도 새로운 법적 영리 조직 유형을 더욱 빠르게 채택하고 있다.

L^3C, B-Corp, 베네피트 코퍼레이션

'저수익 유한책임회사(low 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L^3C)', '베네피트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사업 하이브리드 활동에 대한 두 가지 커다란 제약, 즉 전통적 영리 기업에서 확고한 주주 이익 극대화에 대한 권리와, 전통적 비영리 기업에서 자본 유치에 따르는 제약을 해결하고자 시도한 결과다.

저수익 유한책임회사(L^3C)

L^3C는 미국에 새로 등장한 사회적 기업의 법적 형태이다. 최초의 L^3C 관련법은 2008년 버몬트주에서 일반유한책임회사법의 부록으로 채택되었다. 2008년 이후로, 버몬트주 부록 조항을 모델로 한 법이 9개 주와 미국 인디언부족에 의해 승인되었다(Americans for Community

Development 2011). L^{3}C는 "합법적이라면 어떠한 사업 목적으로도 조직, 운영될 수 있는" 전통적인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되,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하나 이상의 자선적 또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더욱 크게 촉진"시키고 "그러한 목적 달성과 연관성이 없었다면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며", ② "(비록 수익 창출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해당 회사의 중대한 목적이 소득 창출이나 재산 가치의 상승이 아니며", ③ "어떠한 정치적 또는 입법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직되어서도 안 된다(Social Enterprise, 2009. 10. 28). 위의 세 가지 조건은 해당 L^{3}C의 설립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L^{3}C관련법의 부록에는 재단의 프로그램 관련 투자(Program Related Investment: PRI)에 대한 미국 국세청(IRS)의 요건이 의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재단 PRI에 의해 재단은 영리 조직이 대체로 목표 지향적인 경우에 시장금리 미만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재단들은 미국 국세청이 PRI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자선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거액의 벌금에 위험 부담을 느껴 활용을 주저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재단 PRI를 사회적 기업을 위한 미사용된 인내자본(patient capital)으로 보기도 한다(Zouhali-Worrall, 2010. 2. 9). 메리 엘리자베스 고든 B. 만바일러 재단(Mary Elizabeth and Gordon B. Mannweiler Foundation)의 CEO이자 L^{3}C 유형의 핵심 설계자이기도 한 Robert Lang은 "L^{3}C 사업 구조를 PRI 투자가 사전 승인된 메커니즘으로 본다"(Zouhali-Worrall, 2010. 2. 9).

L^{3}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L^{3}C를 유한책임회사의 대안적 형태로 정하고 있는 주에서 국무부 산하 규제기관에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L^{3}C는 해당 주에서 타 지역 사업체로 등록하면 미국 전역에서 사업이 가능하다. L^{3}C 지지자들은 L^{3}C 구조가 재단의 PRI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L^{3}C 유형은 (트랜칭(tranching)으로 알려져 있는) 다층적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L^{3}C 구조 내 고위험 부분에 저비용 재단 자본(low-cost foundation capital)"을 사용하고 이로써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리스크와 비중을 차등적으로 배분하여 시장 수익이 보장되는 매우 안전한 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Americans for Community Development, 2011). 따라서 L^{3}C의 목적은 재단으로부터 저수익 투자를 유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사명에 공감하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주류 투자자들에게 시장이율을 제시하는 투자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B-Corp과 베네피트 코퍼레이션

B-Corp 인증은 2006년에 시작되었으며, B-Corp 인증 기준을 해당 주의 규제를 받는 독특한 법적 개체로서 정관에 성문화한 베네피트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은 B-lab의 창립자인 Jay Coen Gilbert, Bart Houlahan, Andrew Kassoy가 고안해 낸 것이다. B-Corp 인증을 받으면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LLC, 합자회사 등 어떠한 사업 형태도 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세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식적인 지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2010년 4월, 메릴랜드주는 베네피트 코퍼레이션을 공식적인 법적 형태로 인정하는 법을 첫 번째로 채택한 바 있고 (미국의 법인과 회사 활동의 중심지인) 델라웨어주를 포함한 26개 주가 그 뒤를 이었다. 주 차원의 베네피트 코퍼레이션은 LLC 형태도 취할 수 있는 소수의 주(메릴랜드, 오리건)를 제외하면 특정 법적 기업 형태라는 점에서 B-Corp 인증과는 차이가 있다.

B-Cor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적 성과 평가에서 최소 점수(200점 만점에 80점)를 받아야 하며, B Lab에 연간 면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단순히 주주를 넘어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권이 고려되도록 정관을 법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B Lab 등급 평가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기준으로 하여 거버넌스, 근로자, 지역커뮤니티, 환경의 4개 범주로 나뉜다. 각 범주 내에서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검토된다. 가령, 근로자 범주에는 보상과 급여, 종업원 주주제도, 근로환경에 관한 회사 정책 평가가 포함된다. 지역커뮤니티 범주에는 협력업체 관계, 다양성, 지역커뮤니티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인증은 2년간 유효하며, 만료 시 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인증 절차 과정에서, 조사 내용의 약 20%는 문서로 답변해야 하고, 일단 인증된 후에는 무작위 감사 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으며 선택된 법인은 모든 답변을 문서화해야 한다.

위와 같이 인증받기 위해 4개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 평가 범주 모두에서 충분한 점수를 획득해야 할 뿐 아니라, B-Corp의 경우는 인증 절차의 일환으로, 그리고 베네피트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정관이나 관련 협약에 따라 이사 및 관리자들이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소비자, 지역커뮤니티 및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명확한 구조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B-Corporation, 2010). 이를

위해, B-Corp는 "① 간부 및 이사들이 주주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하며, ② 주주들이 이사 및 간부로 하여금 이러한 이권에 대해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추가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개정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명확한 마지막 요건은, "③ 이러한 확대된 권리를 전적으로 주주에게 한정"하는 것으로, 주주가 아닌 이들에 대한 새로운 행동권은 명백히 부여되지 않았다(B-Corporation, 2010). 베네피트 코퍼레이션은 주로 B-Corp 인증을 바탕으로 하지만, "사회와 환경에 대한 중대한 긍정적 영향"을 위해 노력하고 B Lab과 같은 "제3자 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의무를 정관에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주에서 공익의 실현 목표에 대한 연례 보고서 제출 및 측정 가능한 영향의 계량화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진보한 형태다(Chan, 2010).

2012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임팩트 투자·컨설팅 기업인 퍼시픽 커뮤니티 벤처스(Pacific Community Ventures: PCV)에 의해 최초로 미국 사회적 기업 센서스가 시작되었다. 현재 베네피트 코퍼레이션의 승인 건수가 L^3C 승인 건수를 앞서고 있고, L^3C와 베네피트 코퍼레이션 모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B Lab의 benefitcorp.net와 인터섹터 파트너스(Intersector Partners)와 같이 널리 이용되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인터넷 네트워킹 사이트들의 추산에 의하면, 2014년 7월 현재 L^3C와 베네피트 코퍼레이션의 수는 각각 1,000개가 넘는다. PCV의 사회적 기업 센서스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2014년 3월 28일 발표된 중간 결과에 의하면 센서스 대상 사회적 기업의 40%는 영리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영리 업체의 12%가 L^3C 또는 베네피트 코퍼레이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PCV 센서스 대상 영리추구 사회적 기업은 WISE와 같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기보다는 환경 또는 사회적 지향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상품 시장에 진입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영리 구조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 구조가 매력적일 수 있는 반면에, 생산공정(사회적 채용 등)을 사명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공공기금, 자선기금을 통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여전히 비영리 형태가 선호된다. 사회적, 녹색상품시장에서 활동하는 WISE의 경우, 약간의 혼합된 형태가 발견될 수 있다.

이 글의 마지막 장에서는, 또 다른 사회적 기업 유형인 협동조합에 눈을 돌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재등장하고 있는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worker-owned cooperative)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회사인 노동자협동조합(worker cooperative)은 수세기 동안 미국 경제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서점, 식료품점과 같은 소규모 소매업체일 수도 있고, 대규모 제조업체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Jackall and Levin, 1984). 노동자협동조합은 미국에서 다양한 법적 형태로 조직된다. 전통적인 투자자 소유법인은 (이사회를 선출하는) 의결권과 투자자 소유 주식의 순장부 가액에 기초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투자자 소유법인의 권리들은 재산권(property right)으로 분류되는데, 주식은 양도가능하고 시장성이 있기 때문이다(Ellerman, 1984).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의 경우 주식은 재산권보다는 인격권(personal right)을 내포하며, 주식과 그와 관련된 권리들은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기능적 역할을 조건으로 주어진다(Ellerman, 1984). 일부 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모든 주식이 각각 순장부 가액을 유지하며, 노동자 퇴직 시 재직 노동자나 신규 채용자가 그 주식을 구매해야 한다. 다른 법적 유형에서는, 조합권(membership right)만이 근로자 1인당 1개의 주식으로 보장되며, 별도의 내부 자본회계 절차를 통해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각 근로자에게 이익을 배당한다(Ellerman, 1984).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는 위의 두 방식이 절충된 형태로서, 노동자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지만 주식은 재산권으로서 노동자나 외부인이 매매할 수 있다.

ESOP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들이 퇴직 노동자의 모든 주식을 구입하여 계속해서 직원의 과반수 지분 소유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통제권이 한시적이며 시간이 경과하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Ellerman, 1984). 전통적인 노동자협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일반

적으로 소유 주식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지니고 회사의 모든 전략적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설립된다. 반면에 ESOP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집단적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노동자의 통제권은 양도되며 주식을 많이 가진 노동자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Ellerman, 1984).

최근에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설립한 대규모의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연맹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에 힘입어 미국에서 재단, 노조, 시장들의 의제에 커뮤니티 부 축적 전략으로서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재등장하였다. 몬드라곤의 시도에 고무되어, Ted Howeard와 Gar Alperovitz가 이끄는 메릴랜드 대학의 'Democracy Collaborative'는 여러 도시에서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에버그린 협동조합(Evergreen Cooperatives)' 개발을 추진해 왔다. 에버그린 협동조합은 몬드라곤의 사례를 본떠 단지 하나의 단독 사업체가 아니라 협동조합 연맹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높이고자 한다. Howard는 클리브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 대학병원, 클리브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 케이스 웨스턴 대학(Case Western University)을 포함한 클리브랜드의 주요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시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동자협동조합 설립에 앵커기반 커뮤니티 경제개발 전략(anchor-base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Howard와 Alperovitz는 오랜 기간 앵커기반 경제개발을 지지해 왔으며, 이 방식에 의하면, 앵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지역 공급자에게로 향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의 주요 앵커에 해당하는 병원, 대학과 같은 기관들의 공급 체인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Williamson, Imbroscio et al., 2002; Alperovitz, Dubb et al., 2007; Dubb and Howard, 2012).

앵커기반 전략이 노동자협동조합 설립에 결합된 에버그린 협동조합은 '에버그린 협동조합 세탁소(Evergreen Cooperative Laundry)', '에버그린 도시 농민 협동조합(Evergreen City Growers Cooperative)', '에버그린 에너지 솔루션(Evergreen Energy Solutions)'이라는 3개의 노동자 소유 기업으로 구성되며, 모두 지역병원산업이라는 앵커들의 수요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에버그린 세탁소는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사용해 도시의 주요 병원에 세탁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

농민 협동조합은 대규모 수경재배 온실을 갖추고 다양한 상추와 양상추, 바질을 병원 구내식당에 공급한다. 에너지 솔루션 사업의 경우에는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여 클리브랜드 지역의 지주기관, 지방정부 및 주민들에게 에너지 감사 및 시설개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버그린 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에 소속된 클리브랜드의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을 10개로 늘리고 대규모 앵커 기관들과의 긴밀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확충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며 노동자의 부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러한 부가 지역커뮤니티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2009년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는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미국 내 노동자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몬드라곤과 미국 철강노조의 제휴에 따라 피츠버그에 산업용 친환경 세탁소가 설립되었고, 아웃소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성장부문(녹색일자리)에 새로운 노동자 번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장기적 비전하에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향후 계획을 갖고 있다. 피츠버그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에 따라, 한때 제조업으로 번창했던 다른 '녹슨 벨트 도시(rust belt cities)'로 지리적 확충을 꾀하는 동시에 이 부문에 녹색산업용 세탁기기를 설치하고 공급함으로써 수직적인 통합을 이룬다는 목표도 비전에 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새로운 구상을 통해, 우리는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이 미국의 정책결정자, 재단, 지자체 및 노조의 창의력 속에서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결 론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어떠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의 사회적 기업에는 여러 새로운 동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L^3C, 베네피트 코퍼레이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 유형들은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이미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견인력을 넓히고 있다. WISE,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은 다른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은 21세기 사회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되고 있다. 비영리 및 영리 부문 전반에 걸쳐, 환경관련 재화와 용역

시장에서의 활동을 근로 통합 및 경제개발 목표와 결합하는 사업 모형의 비중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영, 비영리 사업, 공공보건, 그리고 심지어 엔지니어링학과 관련 전문학교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중요한 강의로 개설하였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사회적 기업들이 향후 몇 십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KLI

참고문헌

- Adams, C. and F. Perlmutter(1991), "Commercial ventur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s voluntary social welfare agenci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0, pp.25~38.
- Alperovitz, G., S. Dubb and T. Howard(2007), "New approaches are needed to curb poverty", *The Chronicle of Philanthropy* 20(3).
- Altstadt, D.(2007), *Making social enterprises work for welfare: The value of funding transitional jobs through profit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Unpublished masters' thesis).
- Americans for Community Development(2011), http://www.americansforcommunitydevelopment.org
- B-Corporation(2010), Retrieved October 9, 2010, http://www.bcorporation.net
- Catford, J.(1998), "Social Entrepreneurs Are Vital for Health Promotion-But They Need Supportive Environments Too",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3(2), pp.95~97.
- Chan, E.(2010), "Maryland's Benefit Corporation", Nonprofit Law Blog 2011.
- Cooney, K.(2007), Social Purpose Business Study: Agency Report, Boston: Boston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pp.1~39.

- Cooney, K.(2011), "The business of job creation: An examin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approach to workforce development", *Journal of Poverty* 15(1), pp.88~107.
- Dart, R.(2004), "The Legitimacy of Social Enterprise",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4(4), pp.411~424.
- Dees, J. G.(1998), "The Meaning of "Social Entrepreneurship",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ttp://faculty.fuqua.duke.edu/centers/case/files/dees-SE.pdf
- Dubb, S. and T. Howard(2012), Leveraging anchor institutions for local job creation and wealth building, Big Ideas for Job Creation, http://community-wealth. org/_pdfs/news/recent-articles/04-12/paper-dubb-howard. pdf
- Ellerman, D.(1984). "Workers Cooperatives: The Question of Legal Structure", R. Jackall and H. M. E. Levin, *Worker cooperatives in Ameri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57~274.
- Galera, G.(2010), "Social enterprises and the integration of disadvantaged workers", Becchetti, L. and Borzaga, C., *The economics of social responsibility: The world of social enterprises*, London: Routledge, pp.105~122.
- Garrow, E. E. and Y. Hasenfeld(2014), "Social Enterprises as an Embodiment of a Neoliberal Welfare Logic",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 Jackall, R. and H. M. E. Levin(1984), *Worker cooperatives in Ameri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ohnson, S.(2000), "Literature Review on Social Entrepreneurship", Retrieved November 2, 2000, http://www.bus.ualberta.ca/ccse/WhatIs
- Kerlin, J. A.(2006),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 *Voluntas* 17, pp.247~263.

- Nyssens, M.(Ed.)(2006),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New York: Routledge.
- Social Enterprise, B.(2009, 10. 28), The L^3C a Complete Backgrounder [web log post], Retrieved from http://socialenterpriseblog.com
- Williamson, T., D. Imbroscio and G. Alperovitz(2002), *Making a place for community: Local democracy in a global era*, Psychology Press.
- Young, D. R.(1998), "Commercialism in nonprofit social service associations: Its character, significance, and rationale", B. A. Weisbrod, *To Profit or Not to Profi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95~216.
- Zouhali-Worrall, M.(2010, 2. 9) "For L^3C companies, profit isn't the point", CNNMoney.com